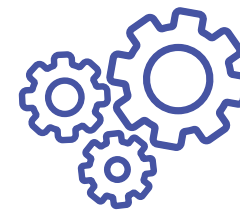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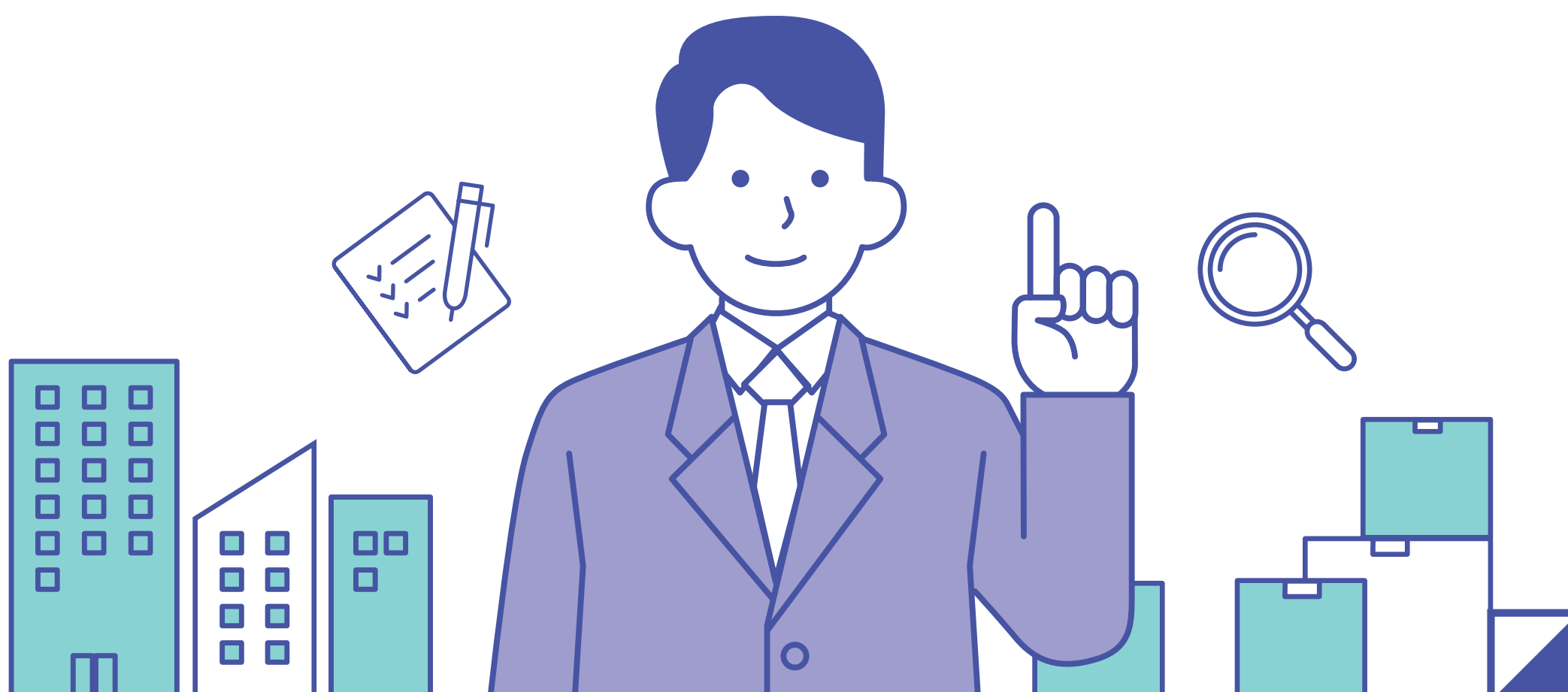


2026
하반기



달라지는 관세행정





01.

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

종전

□ 면세품 교환 절차

-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교환을 원하는 경우
 -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신고 필수
 - 재출국 시에 교환물품 수령 가능



재출국 시 수령

달라지는 내용

□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

- 면세범위 이내의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동일물품으로 교환을 원하는 경우
 -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신고 생략
 -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, 택배·우편을 통해 수령
- 면세범위 초과하는 면세품은 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교환 가능

* 교환가능기간 등은 면세점 문의 필요



국내 면세점 방문 수령



택배·우편 수령

사례

개정 전

A씨는 선물용으로 구매한 면세품(\$200)을 동일 물품으로 사이즈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, 교환을 하려면 입국 시에 휴대품신고하여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재출국 시 수령할 수 있어 불편하여 교환을 포기하였다.

개정 후

A씨는 선물용으로 구매한 면세품(\$ 200)을 동일 물품으로 사이즈 교환하는 경우에는, 일반 온라인쇼핑몰 구매 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택배·우편을 통하여 교환 물품을 배송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기대효과

(해외여행객) 해외여행 시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에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

(면세업계) 면세품 교환 관련 민원 감소 및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에 따른 이용률·매출 향상 기대

시행일

'26. 7. 1. 시행(「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43조 개정)

02.

통관검사과 | 042-481-7904

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 제한 완화

중전

□ 검사비용 신청방법 (제10조)

-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
- 전자통관시스템(유니패스)을 통해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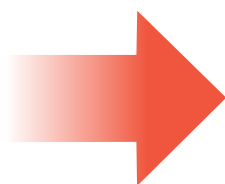
달라지는 내용

□ 신청기한 연장 및 신청방법 다변화

- [현행과 같음]
 - <신설>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6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
- [현행과 같음]
 - <신설> 외국인·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전산 신청이 불가한 경우 팩스,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



유니패스로 60일 이내 신청



60일 연장 가능



팩스, 이메일로 신청 가능

사례

개정 전

- A사는 전산시스템 오류로 세관 검사비용 지원 신청 서류를 60일 내 확보하지 못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.
- 70대 B씨는 세관검사비용 지원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가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였다.

개정 후

전산장애 등으로 적기에 신청을 못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.

기대효과

재난피해 화주 및 전산신청이 어려운 화주를 위해 신청기한 연장 및 오프라인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

시행일

'26. 7. 1. 시행(「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10조 개정)

03.

세원심사과 | 042-481-7871

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로 납부 접근성 향상

종전

□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

- 여행자·우편·이사화물 등 부과 고지 대상 물품의 납세 편의를 위해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해 왔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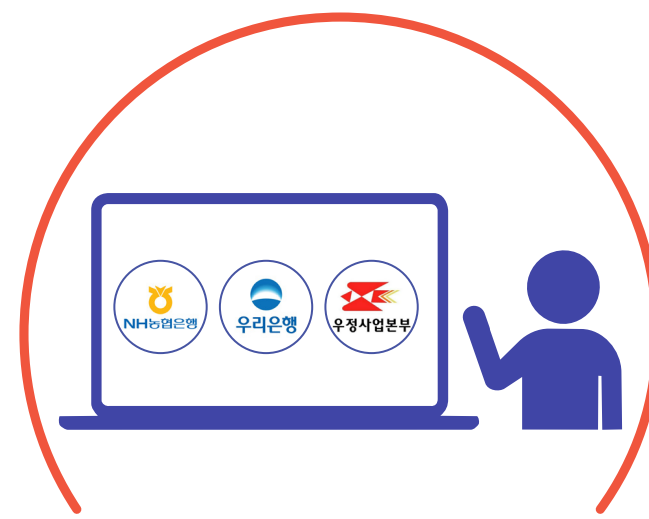


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1곳
(농협)

달라지는 내용

□ 가상계좌 납부기관 확대

- 기존 농협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은행 및 우정사업본부를 추가 참여기관으로 운영하여 납부편의 제고



납부 기관 3곳으로 확대
(농협, 우리은행, 우정사업본부)

사례

개정 전

가상계좌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농협은행 계좌로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농협은행이 아닌 타행 이체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였다.

개정 후

가상계좌 발급 금융기관의 확대(농협은행→농협은행, 우리은행, 우정사업본부)로 납세의무자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절감하게 되어 납세자 편의성이 제고되었다.

기대효과

가상계좌 납부기관 확대로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 및 비용 절감

시행일

'26. 6. 1. 시행



04.

세원심사과 | 042-481-7871

개인 자가사용물품 등 반품 신고 취소 절차 마련

종전

- 면세범위 초과하는 면세품 환불 시 환급 절차
-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한 후 면세품 환불 시 납부기한 전이라도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



세금 납부 전이라도 납부 후 환급

달라지는 내용

- 면세품 환불 시 부과 취소 절차 도입
-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 환불 시 납부기한 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**종전과 달리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**

* [적용대상]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(관세법 제106의2 제1항), 국제무역선(기)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(관세법 제106조의2제2항)



세금 납부 전이면 부과 취소 가능

사례

개정 전

여행자가 입국 시 자진 신고한 면세점 구매품을 **세금 납부 전 환불하려는 경우**에도 세금을 납부한 후 환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**환급을 신청**해야 했다.

개정 후

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 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 **이미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는 관세 환급을 신청**하고, **납부기한 내 관세 납부 전**이라면 해당 **관세의 부과 취소 신청이 가능**해졌다.

기대효과

세금 납부 후 환급 신청에 따른 납세자 불편 제거 및 관세 행정 효율성 제고

시행일

'26. 4. 6. 시행



05.

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

종전

□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* 발급

* 평균세액증명서,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,
수입세액분할증명서

• 업체가 세관장에게 신청서* 제출하여 세관장이 심사 후 발급

* 증빙서류 첨부



세관장 신청 후 발급

달라지는 내용

□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

• [좌 동]

• <신설>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한 업체는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

- 자율발급업체는 증명서 내용을 관세청
전산설비에 입력*하는 방식으로 직접 발급

* 증빙서류 첨부



증명서 자율발급

사례

개정 전

수출업체 A사는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환급
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번 세관장에게
신청해야 해서, 신청서 제출, 세관 확인, 증명서
발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다.

개정 후

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한 수출업체
A사는 세관장에게 별도로 증명서 발급을
신청하지 않아도, 환급관련증명서의 내용을
전산설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당 증명서를
직접 발급할 수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
수 있게 되었다.

기대효과

신속·간편한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기업의 편의 제고

시행일

'26. 7. 1. 시행 [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12조의2,
제13조의2 신설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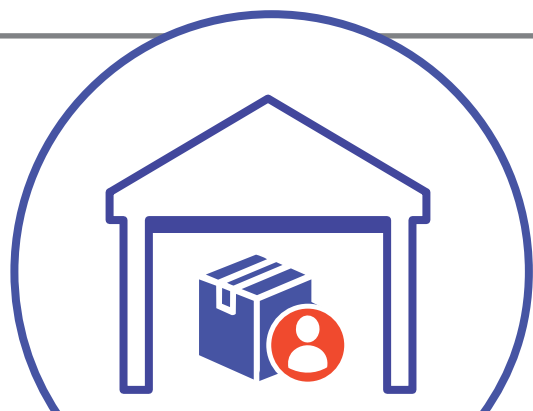
06.

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

종전

□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

-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
자가화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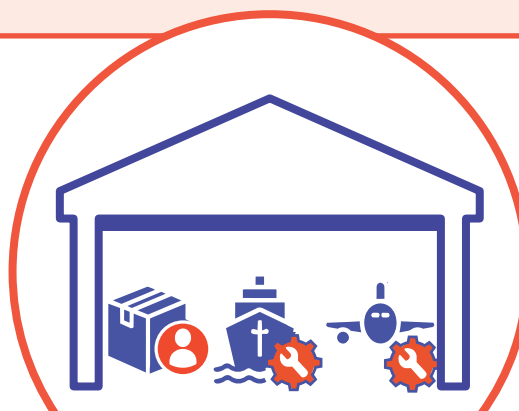


자가화물만 반입 가능

달라지는 내용

□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

-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
자가화물 외에 자가화물이 아닌
선박·항공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
부속품 추가



자가화물 외 반입 가능 화물 확대

사례

개정 전

선사·항공사가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
및 부속품이 공급업체 자가 화물이 아닌 경우
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
불가했다.

개정 후

선사·항공사가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
및 부속품이 공급업체 자가 화물이 아닌
경우라도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자가용
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해졌다.

기대효과

선기용품 공급업체 불편 해소를 통한 선(기)용품 공급업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공급업
활성화에 기여

시행일

'26. 7. 1. 시행(「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3조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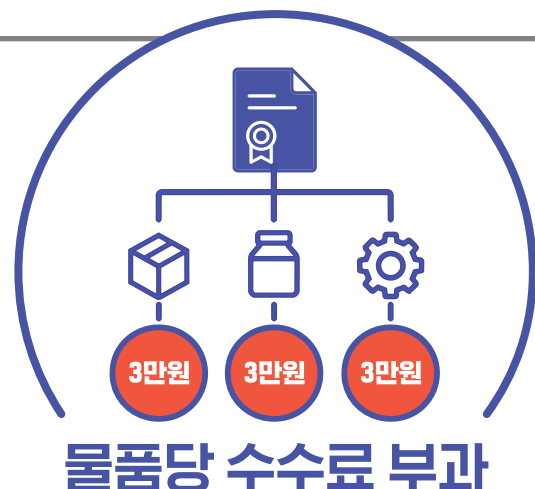


07.

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

종전

-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
- (수수료) 물품당 3만원 부과



달라지는 내용

-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완화
- 물리적·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
 - 물품당 3만원 부과
- 물리적·화학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물품
 - 무료



사례

개정 전

S사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에 각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.

개정 후

S사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**특별히 물리적·화학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신청 수수료 납부 부담 없이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**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되었다.

기대효과

사전심사 이용을 활성화하여 수입기업의 안정적인 FTA 활용 지원

시행일

'26. 3. 20. 시행(「FTA관세법 시행규칙」 제31조 3항)

08.

전자상거래통관과 | 042-481-7918

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

중전

-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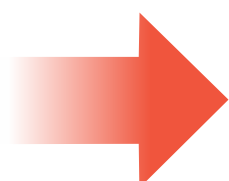
달라지는 내용

-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**일회용 인증번호 추가 기재**
 - <신설>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**관세정보 시스템에 검증요청**하고 관세정보 시스템은 검증 후 해당 수입화주에게 **일회용 인증번호 발급**
 - <신설>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불일치인 경우 접수 불가
 - <신설> 협력인정업체*를 통한 주문 건 중 주문자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 해당 업체에 일회용 개인통관부호와 인증번호를 제공하여 주문자가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음

* 회원 본인인증 등 관세청 요건을 만족하여 인정 받은 업체



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



일회용 인증번호 추가 기재



사례

개정 전

A는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작성 후 주문하였으나, 해외에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도용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였다.

개정 후

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작성 후 주문하게 되어 A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.

기대효과

수입화주 정보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기여

시행일

'26. 8. 15. 시행 예정(「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」 제13조에서 제15조 개정)



09.

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| 042-481-3239

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

종전

-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
- 승객예약자료 전부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



전부 미제출 시 과태료

달라지는 내용

-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
- 승객예약자료를 과실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**전체 제출 대상 중 미제출한 부분이 10%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**



일부 미제출(10% 이상)도 과태료

사례

개정 전

A항공사가 제출해야 할 승객예약자료 중 과실로 일부 미제출하더라도,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.

개정 후

A항공사가 제출해야 할 승객예약자료 중 과실로 10% 이상을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.

기대효과

우범여행자 선별에 필수적인 승객예약자료(PNR) 제출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마약·테러 등 관세국경 위험관리 강화

시행일

'26. 7. 1. 시행(「관세법」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, 「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」)

1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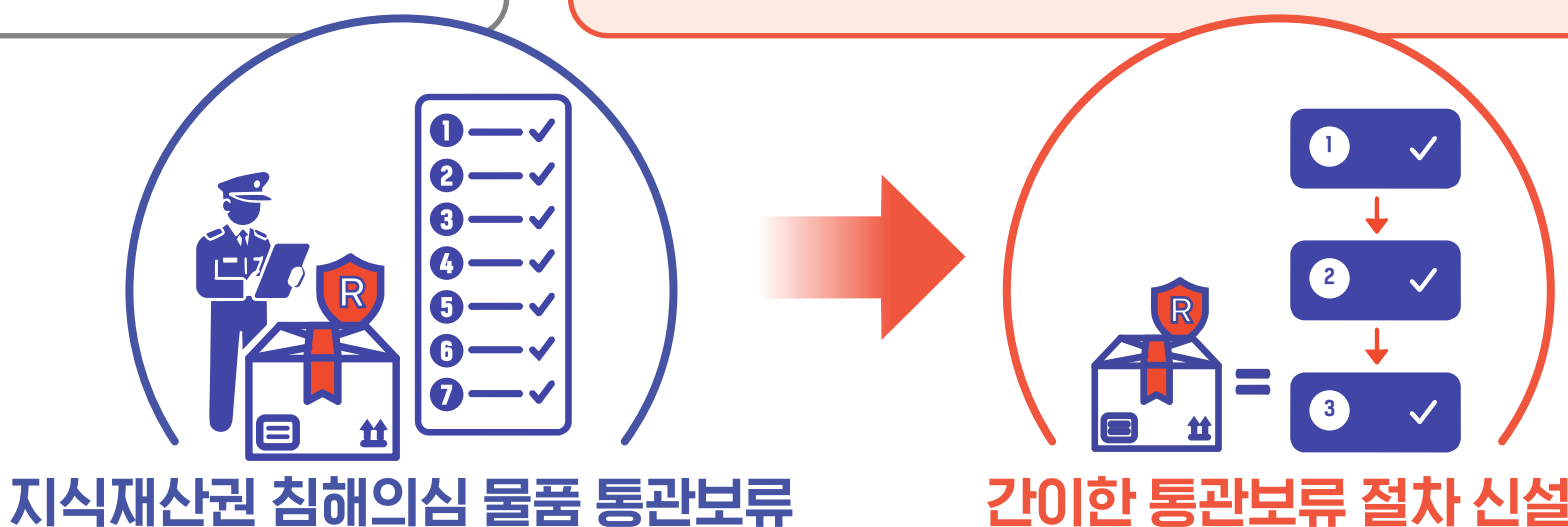
소액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

종전

-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
통관보류(관세법 제235조)
- (침해의심 물품) 권리자가 담보를
제공하고 통관보류 등을 요청
- ※ [절차] 통관보류 요청, 담보제공,
법원 제소사실 입증 등 7단계

달라지는 내용

- 상표권 침해와 관련 소액화물 통관 환경에 맞는
간이한 통관보류 절차 신설(관세법 제235조의2)
- (대상) 물품가격 미화 2,000달러 이하 특송물품,
미화 1,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
- [절차] 3단계로 축소
 - ① 침해의심 사실 통보
 - ② 상표권자침해입증자료 및 수출입자비침해입증자료 제출
 - ③ 통관보류 여부 결정



사례

개정 전

A사(상표권자)는 다건의 소액화물이 A사 상표권을
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**침해
의심 물품의 통관보류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
시간·비용 부담이 커 통관보류 요청을 포기하였다**

개정 후

소액의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에
대하여 **담보제공 등 복잡한 절차 없이
신속히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**하여 A사
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기대효과

소액화물 통관 환경에 적합한 간이 통관보류 절차 신설로 상표권 보호 실효성 제고

시행일

'26. 4. 1. 시행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43의2 신설)